



##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대학교의 상호교류 협약서



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대학교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학술연구, 실무실습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대학교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가 학술연구 및 실무실습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할 주요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의 범위) 양 기관에서는 교육, 학술연구 및 실무실습의 향상에 기여하는 제 분야에서 다음에 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.

- 가. 현장실무형 전문인 육성을 위한 공동 노력
- 나. 강좌운영, 현장실습, 공동연구, 특강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진행
- 다.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정보 제공
- 라.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, 시설의 상호 지원
- 마. 기타 협력기관이 합의하는 사항

제3조(협력원칙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의를 갖고 성실히 임해야 하며, 기본적인 사항은 양 기관의 관계규정에 따르되,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상호협의 사항) 제2조 각 호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5조(효력 발생 및 종료) 이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각 기관이 교류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 변경)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. 11. 21.



대구지방변호사회  
DAEGU DISTRICT BAR ASSOCIATION

회장 이재동

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23 변호사회관 4층



대구대학교  
DAEGU UNIVERSITY

총장 홍덕률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